



## 논문집 발간 지침

규정번호	3-1-45		
제정일자	1989.03.01		
개정일자	2011.05.13		
개정번호	Ver. 11	총페이지	4

**제1조(목적)** 본 대학 교수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,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산업 현장의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에 활용토록 하며, 연구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을 발간한다.

**제2조(논문 접수 및 발간)**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은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발간일 2개월 전에 원고 접수를 마감한다.

**제3조(투고 자격)** 본 대학 재직 교수에 한하나, 본 대학 교수가 포함된 공동 연구의 경우는 교내·외의 연구자도 가능하다.

**제4조(투고 지침)** ① 논문원고는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라야 한다.

② 논문원고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에 원본 2부(사진, 그림 포함) 및 논문을 작성한 파일(한글 성명, 예 : 홍길동.hwp)을 제출한다.

③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논문 투고 요령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

④ 원고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포함한다.

1. 제목, 연구자 성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공동연구자의 소속 및 직급이 다를 경우 \*로 표시한다.

2. 요약(Abstract) : 약 150단어 정도로 영문요약을 작성하되, 도표 또는 참고문헌 표시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.

3. 본문 : 2단으로 작성

4. 참고문헌

⑤ 영문 성명은 이름을 먼저, 성은 뒤에 표기한다.(예 Kil-Dong Hong)

⑥ 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, 연구책임자는 앞부분에 공동연구자 뒷부분에 표기한다.

⑦ 본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며, 참고문헌을 본문에 표시할 때에는 해당 문구의 모난괄호([ ])에 그 문헌 번호를 표시한다.

예) ..... 보고되었다<sup>4</sup> .....의 연구결과[5, 6]

⑧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수순대로 표기하되 [1],[2],[3]의 모난 괄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
1. 정기간행물 : 저자명, 제목, 잡지명(이탤릭체로 표시), 권, 호, 쪽수, 발행년월

예) [1] Goodman, B., "Internet Telephony and Modern Delay", IEEE Network, Vol.3, No.2, pp.34~41, May/Jun. 1999

2. 단행본 : 저자명, 도서명, 판수, 편집자명, 권, 쪽수, 출판사, 출판지역(외국의 경우에 한함), 발행년월(단, 판수, 편집자명, 권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)

예) [2] Bellman. R., "Introduction to Matrix Analysis", 2nd Ed. pp39~52, McGraw-Hill, New Youk, 2000

3. 학술지 : 저자명, 제목, 학술지명, 권, 호, 쪽수, 발행년월

예) [3] 김상훈, "영상내에서의 얼굴영역정보검출을 위한 색상 정규화", 전자학회 학회 논문집 제2권 제3호, 273~277쪽, 2002. 12

⑨ 장이나 절의 번호는 1., 1.1, 1.1.1 등으로 표기한다.

⑩ 모든 표와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야 하며,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예) <표 1>, <그림2.3>, <Table 1>, <Fig. 2.3>, <Figure 2.3>

⑪ 표의 제목은 표 위에,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표시함.

⑫ 특별히 해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본문에 <sup>1), 2)</sup> 와 같이 위첨자로 표시하되 해당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한다.

⑬ 논문의 양은 최대 10페이지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

⑭ 편집용지 : A4 용지

(단위: mm)

위여백	아래여백	왼쪽여백	오른쪽여백	머리말	꼬리말	제본
20	15	24	24	20	12	0

⑮ 대내·외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진행된 연구는 논문 말미에 당해 연구비 지원 내역을 기재한다.

**제5조(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)** ① 논문 심사위원은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되, 논문 1편당 2명(1명 이상의 교외 인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.

③ 심사 위원으로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절차는 인비로 진행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심사위원 기능)** ① 심사위원은 대상 논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, 보완 등의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②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의 의견을 별지 서식에 의해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**제7조(논문 심사의 결과)** 심사 결과는 “게재 가”, “임의 수정 후 게재 가”, “필히 수정 후 게재 가”, “게재 불가”의 4종으로 판정한다.

1. “게재 가”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이를 게재할 수 있다. 단,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필자가 수정한 후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고 게재한다.

2. “임의 수정 후 게재가” 또는 “필히 수정 후 게재가”로 판정된 경우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하여야 게재할 수 있다. “필히 수정 후 게재가”로 판정된 경우는 수정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회송하여 “게재 가”, 또는 “게재 불가”로 판정될 때까지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논문 제작 상 허용되는 기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3. “게재 불가”로 평가된 논문은 게재하지 아니하며,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재심을 위한 심사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위촉하며, 재심 결과 “게재 불가”의 판정을 받은 경우는 게재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(보안)** 논문심사에 관련된 자는 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또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대외비로서 별도 보관하고 취급자 이외에는 일체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없다.

**부 칙**

- (1) **(개정)** 이 지침의 개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2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199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